



1. 공연장 운영 방침 및 사용안내

기술인력 및 장비 사용안내		
구분	세부내용	비고
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덧마루 설치 시 설치/철거 인력 대관자(신청인_이하생략) 부담 -덧마루 설치 시 마감재 대관자 부담 -공연 소품 등 전환 인력은 대관자 부담 -댄스플로워 설치시 설치/철거 인력 대관자 부담 -댄스플로워 테이프 대관자 부담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빙라이트 및 무빙콘솔 조작인력은 대관자 부담 -기본 라이트 사용 시 극장 스태프이 운영하나 설치, 철거인력은 대관자 부담 -포그사용시 포그액 및 조작인력 대관자 부담 -드라이 아이스 사용 시 드라이아이스 및 조작인력 대관자 부담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황녹음신청시 녹음CD(CD-R)는 대관자 부담 -공연 음원(MR/AR)은 CD 또는 USB로 대관자 준비 -마이크 사용 건전지(AA사이즈 1대당 2EA/ 알카라인) 대관자 부담 -촬영 음원 요청시 (커넥터 종류, 필요음원,촬영위치) 사전협의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터 및 자막기 사용 시 조작인력 및 노트북 또는 컴퓨터는 대관자 준비 -프로젝터 사용 전 기기사양 및 렌즈 규격 및 해상도 사전협의 필요 (4:3/1024×768) 비율/ 한계투사 사이즈 (약 가로1062cm×세로797cm) -외부 장비 반입 시 전원 사용관련 협의 -자막기 PPT 또는 이미지 (16:9/1920×1080) 사용 	없음
기술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규모 이상 공연의 극장 기술 인력 지원 요청 시 (준비대관 2일 이상, 공연 횟수 3회 이상인 경우) 부대설비 사용료 중 디자인비 발생 (연습참관 및 프리덕션 업무) -공연장 특성상 기획공연, 공동기획 야외공연 등의 일정 등에 따라 기술인력 지원 여부는 협의가 필요함. 	무대감독1명 조명감독1명 음향감독1명
공지사항	<p>※공연장 기술 인력은 공연장장비 운영과 무대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대관자(신청인)가 별도의 공연진행 또는 공연제작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주시고, 가급적 무리한 기술 인력지원 요구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무대기술 또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자세한 내용 일반대관안내참조



2. 기술 회의 제출 서류 안내

※ 스태프 회의 전 최소 1주일 전까지 무대기술팀(stagetech@hanokmaeul.or.kr)으로 제출 바랍니다.

구분	세부사항
기본서류	[극장 서식] 1. 공연 정보 1부 <서식B-1> 2. 분장실 사용 확인서 1부 <서식B-2> 3. 반입반출 장비목록 1부 <서식B-3> 4. 출입자 명단 1부 <서식B-4> 5. 가연물(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 사용 승인서 1부 <서식B-5> *해당 대관자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B-6>
	[단체 서식] 1. 공연 프로그램 1부 2. 공연 대본 1부 3. 공연 일정표(작업, 리허설, 공연, 철수 세부사항 포함) 1부 4. 악보 1부 *해당 대관자
기술서류	기술 인력 참여 단체
	1. 장치 제작도 1부 2. 무대 장치 평면도 1부 3. 무대 장치 입면도 1부 4. 무대장치물 기계 플라잉 사용 목록 1부 5. 조명 도면 및 배치도 1부 6. 음향 계통도 및 편성표 1부 7. 공연 진행 큐시트 1부 8. 악기 편성표 1부
	기술 인력 미 참여 단체
	※ 반드시 스태프 회의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무대 배치도 (자유양식) 2.음향 운영 계획서 <서식B-7> 3.조명 운영 계획서 <서식B-8> 4.공연 큐시트 또는 식순 및 프로그램 (자유양식)
방염서류	※ 아래 양식 중 1부를 무대 설치 당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관자 가. 방염 성능 시험 성적서 (소방서 발급) 나. 방염 성능 검사 확인서 (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다.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결과서 (ex. 섬유기술연구소 등)
문의	※ 무대기술팀(02-2261-051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남산국악당 무대사용 안전수칙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무대근무(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대에서는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2. 무대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3. 무대 작업 시 구두 또는 슬리퍼를 신을 수 없습니다.
4. 무대운영요원 및 공연자 외에는 무대 출입을 금합니다.
5. 무대에서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취식할 수 없습니다.
6. 무대에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무대에서의 모든 작업은 무대기술팀의 지시에 따릅니다.
(무대와 부속공간에서 무대장치물의 제작 및 가공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금합니다.)
8. 무대에서는 허가 없이 용접 및 전기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9. 무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화물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10. 승인된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반입, 설치, 사용 시 무대기술팀의 지시에 따릅니다.
11. 무대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출입 비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12. 화재 등 비상시에는 안내 표지판과 안내방소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13. 리허설 및 공연이 끝난 후 사용한 시설, 장비, 비품 등은 제자리에 정리정돈합니다.



가연물 및 발화물질 안전수칙

1. 가연물 및 발화물질 안전수칙

- 가. 사전 허가 되지 않은 가연물과 발화물질은 실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나. 실내에서 제작 및 가연성 도료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 다. 승인받은 가연물 및 발화물질이라도 실내사용 시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라. 소방시설물 주변에 무대장치물을 쌓아 놓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작업자는 주변 1.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마. 작업 외 불필요한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 바.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사. 승인된 가연물 및 발화물질 사용 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근거리에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는 대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2. 위반자 조치

- 가. 1차 : 상기 수칙 위반 시정 경고
- 나. 2차 : 1차 시정 경고에 불응 또는 미조치 시 작업 중지 또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 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제2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가연물 및 발화물질, 오염물질 및 공기질 관리

1. 가연물 및 발화물질의 정의

- 가. 가연물이란 공연을 위한 장치물, 대도구 등에 쓰이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약품 등을 말한다.
- 나. 발화물질이란 휘발유, 시너(thinner), LP가스 등의 인화성물품과 직접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한다.

2.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 가. 발화 물질은 반입을 불허하되 원할 한 공연진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대관자는 <가연물/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 사용승인서>를 무대기술팀에 제출하고 국악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대관자는 발화물질 사용 및 설치 시 국악당의 요청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국악당의 <무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방염 관리

- 가. 대관자는 반입하는 물품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방염 필증 방염시험성적서를 장치 반입 전까지 무대기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대관자는 반입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입물품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시료품 (가로 29cm x 세로 19cm)을 장치 반입 전까지 국악당 무대기술팀에 제출하거나 반입 물품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다. 대관자는 기존 방염성능 성적서를 발급받은 3년 이내의 재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 검사기관의 재발급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경과한 재사용 물품과 새로이 추가되는 방염 대상물품은 반드시 방염성능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대관자는 국악당 무대기술팀 혹은 소방 안전 관리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4. 오염물질 및 공기질 관리

- 가. 대관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준수를 위하여 공연장 및 로비에 설치하는 시설물 제작에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실내 환경오염발생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기타 불가피하게 시설물에서 방출되는 오염 물질은 아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제10조 제1항 관련) 유지기준 (단위: mg/m³·h)

구분 \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접착제	0.12	2.0	0.080
페인트		2.5	
실란트		1.5	
퍼티		20.0	
일반자재		4.0	

- ※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기화합물로 위 표 구분에 따른 방출 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실란트의 경우 오염물질별 단위는 mg/m³·h로 적용한다.
- ※ 일반자재란 건축물 내부용 자재 중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를 제외한 건축자재를 말한다.
- ※ 관계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